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 대규모 닭 불법도축 및 판매 사실로 밝혀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비위생적 환경에서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을 먹여 충격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식탁에 그대로 올라올 경우 위험

▲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의 대표이사 '김탐욕'씨와 그가 비밀리에 운영한 불법 닭장의 모습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이 불법으로 도축시설을 설치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즉석에서 닭을 도살하여 판매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김판사 부장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욕심' 대표이사 '김탐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탐욕 씨는 앞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도축한 닭을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닭욕심'의 불법 영업장 소재지인 ○○시에 도축장 허가여부를 조회한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람의 타액, 이쑤시개, 담뱃재, 가래침 등 기타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에게 먹인 점이 밝혀졌다. 현직 의사 박닥터 씨는 "불법 닭장의 닭들은 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항생제를 남용하기 때문에 잔류 항생제 문제도 남아있다"며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무단 공급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이 상존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축 유통된 가축은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먹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는 수의사가 있어 식용 여부를 수의사가 판단하지만. 불법 도축된 가축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현직 수의사인 김수의 씨는 "어떻게 키워졌고, 닭들의 도축 전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해당 경우는 질병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도축돼 무분별하게 음식점에 배송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 이에 대한 관련 활동 진행(시위, 입장 표명 등)
언론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속보 기사 쓰기
정당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의 입장 발표하기(대변인 활용)